의 안 번 호

1745

【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]

토보 검

## 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21. 5. 3.(월)

O 제 출 자 : 중구청장

O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3.(월)

○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5. 14.(금)

## 2. 제안이유

O 현재 사용 중인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칭을 통일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현재 사용중인 용어 반영: 살피미 ⇒ 돌보미(안 제7조)
- O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## 4. 근거법규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19조
  -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

# 5. 검토의견

O 본 조례는 현재사용 중인 행정 용어적용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 타당하다고 사료됨